



자기부담금 안내문

Q.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자기차량 사고수리시 손해액 (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 20%)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수리비 등의 누수를 방지하여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시) 과실비율 50%, 자차수리비 200만원, 대물수리비 400만원

보장종목	수리비	과실비율 적용 수리비	자기부담금 (예:정률20%)
자기차량손해	200만원	100만원	20만원(100만원*20%)
대물배상	400만원	200만원	해당없음

주) 자기부담금제는 자기차량손해에만 적용되며 대물배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정비업체에 직접 납부하셔야 하며 보험사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실제 확정된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여 부담한 경우 차액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드립니다.

Q.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위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약관 제 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4항>

Q.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있는 사고의 손해배상금(상대방 보험사로 받은 대물배상 보험금 포함)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의 자기부담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1.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관 제 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5항>

2.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약관 제 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6항>

【용어풀이】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